

제3장 논문심사 규정

1. 논문의 심사 및 채택은 본 규정에 따르며, 단신(Notes, Communication, Letter 등)이나 총설(Review)도 논문으로 취급한다.
2. 논문 투고시 편집위원장이 논문형식 및 체제 등과 관련한 1차 심사를 마친 후, 이를 통과한 논문만 심사를 의뢰한다. 단, 1차 심사에서 게재불가 된 논문은 저자가 수정하여 재투고해야 한다.
3. 논문의 심사는 3명의 심사위원에게 의뢰하며, 심사위원은 논문의 전공분야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저자와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 위촉하고 그 명단은 일체 공개하지 아니한다.
4. 심사내용은 저자 이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5. 심사결과는 “Accept(게재가)”, “Minor correction(수정 후 편집위원 확인)”, “Major correction(수정 후 심사위원 확인)”, “Reject(게재불가)”로 구분하며 아래의 기준으로 판정한다.
 - (1) “Accept(게재가)”는 논문의 내용이 우수하고 형식도 투고규정을 만족하고 있어 사실상 저자의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 없는 경우.
 - (2) “Minor correction(수정 후 편집위원 확인)”은 심사위원의 지적사항이 상대적으로 사소하여 저자의 수정이나 보완내용을 심사자가 재확인할 필요 없이 편집위원이 확인하여 게재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로 아래 사항 등에 해당한다.
 - 가. 단순한 오타자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
 - 나. 단순한 편집상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
 - 다. 그림이나 표 등의 가독성이 높이기 위한 사소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
 - 라. 논문의 내용과는 무관한 기타 사항의 사소한 수정이 필요한 경우
 - (3) “Major correction(수정 후 심사위원 확인)”은 논문의 내용이나 전개 또는 형식 등에 있어서 많은 오류가 지적되어 저자로부터의 보완 및 수정사항을 심사위원이 다시 확인해야 하는 경우
 - 가. 논문의 목적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경우
 - 나. 실험의 전개방법에 대한 설명이 불분명하여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
 - 다.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전달력이 부족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
 - 라. 새로운 이론이나 결과를 제시함에 있어 논리전개가 부족한 경우
 - 마. 영문초록의 질적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바. 영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영어표현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사. 논문의 형식이나 가독성, 그리고 편집수준에 있어서 상당한 보완이 필요한 경우
 - 아. 기타 투고규정을 만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어 심사자의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
 - (4) “Reject(게재불가)”는 논문의 수준이 현저히 낮아 전면적인 재작성 없이는 게재가 불가능한 경우
 - 가. 이미 발표된 내용과 동일하거나 사실상 독창성과 차별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나. 기존의 내용이나 이론을 단순히 종합 서술한 경우(“총설/Review”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)
 - 다. 논문의 형식이나 편집수준이 너무 부실하여 논문의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라. 영어논문의 경우 영어표현의 수준이 너무 낮아 전면적인 재작성이 없이는 연구결과의 전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 - 마.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
 - 바. 기타의 사항 등으로 인해 게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

6. 심사위원 3명의 판정결과를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편집위원장이 게재여부의 판정 또는 재심사를 의뢰한다.

심사위원1	심사위원2	심사위원3	종합판정	비고
accept	accept	accept	accept	-
accept	accept	minor	minor	-
accept	accept	major	major	-
accept	accept	reject	major	편집위원장*
accept	minor	minor	minor	-
accept	minor	major	major	-
accept	minor	reject	major	편집위원장*
accept	major	major	major	-
accept	major	reject	major	-
accept	reject	reject	reject	-
minor	minor	minor	minor	-
minor	minor	major	major	-
minor	minor	reject	major	편집위원장*
minor	major	major	major	-
minor	major	reject	major	-
minor	reject	reject	reject	-
major	major	major	major	-
major	major	reject	major	-
major	reject	reject	reject	-
reject	reject	reject	reject	-

* 편집위원장의 권한으로 최종판정하거나 제4의 심사위원에게 추가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.

7. 심사위원은 심사의뢰 후 15일 이내에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본 학회에 제출해야 하며, 부득이한 사정으로 1차 기한 내에 심사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심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7일간 심사기한을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으나 특별한 요청이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1차 심사기한 또는 연장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 위촉을 해지하고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.
8. 본 학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심사내용과 수정사항 등을 저자에게 통보한다. 저자는 심사 결과가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하다고 편집위원장이 동의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할 수 있다.
9. 심사의견이 저자에게 통보된 후 3개월 이내에 저자로부터의 수정본 제출이나 적절한 대응이 없을 경우 자동적으로 게재불가로 처리된다. 다만, 저자로부터 수정본 제출 연장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장은 이를 검토한 후 저자와 연장기한을 협의하여 1회에 한해서 최장 3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.
10. 본 학회는 심사 완료되어 게재예정인 논문의 경우 심사완료시점 기준 1주일 이내에 이를 저자에게 통보하여 저자가 게재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.
11. 편집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부편집위원장에게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.